#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23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윤한홍

고동진 · 김소희 · 권영진

주호영 · 이달희 · 이헌승

임종득 • 권성동 • 권영세

송언석 의원(13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고령화·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 다. 신탁업자가 비(非)신탁업자인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 항까지 신설).
-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 안 제110조의2 신설).
-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신탁 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신설).

- 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 까지 신설 등).
- 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 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안 제119조 제5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8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으로, "수익권"을 "수익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수익권에 대하여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수익권의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수익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5항 중 "제110조의 수익증권"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

제102조의 제목 중 "충실의무"를 "충실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수익자에"를 "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업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을 "재산(해당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를 포함하되,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담보권(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담보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으로 한정한다)
-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하는 재산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2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본질적 업무(해당 신탁업자가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신탁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2.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 3.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업무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④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탁업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신

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①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적정성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법 또는 신탁계약에 대한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수익증권의 발행 등) ①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탁재산의 종류
- 2. 신탁업자의 유형
- 3. 신탁재산의 구성 및 범위
-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증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수익의 분배
- 2. 수익의 순위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계획(이하 "수익증권발행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증

권발행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으로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 2. 수익증권발행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수익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저해하는 경우
- ⑥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익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록된 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탁업자의 상호
-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수익증권의 발행일
- 4.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은 신탁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그 발행과 수익증권 발행계획의 등록,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0조의2(신탁재산의 평가 등)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신탁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2. 신탁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 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정하고 정확한 신탁재산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신탁재산 평가 및 발행가격산정의 적정성, 공정성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0조의3(수익증권의 판매) ①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증권의 판매에 관하여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의4(수시공시)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2. 제11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 내용
  -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추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시공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시공시에 관하여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의5(신탁보고서) ①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인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인 등의 확인사항은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있다.
  -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2. 신탁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
- 3.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평가액
-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신탁업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서를 제110조의4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의6(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신탁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③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 증권과 관련한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7(수익자집회)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에 대한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집회를 두며, 수익자집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어느 종류수익자(「신탁법」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류수익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집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신탁법」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익자집회에 관하여 전체 의결권(「신탁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갖는 의결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집회의 목적과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수익자집회의 의소집을 그 신탁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집회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결권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8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로, "수익자총회"는 "수익자집회"로 본다.
- ④ 수익자집회의 소집통지, 질서유지, 의결권의 대리행사, 결의취소·무효 및 부존재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총회"는 각각 "수익자집회"로,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각각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신탁업자"로,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전체 의결권의 수"로, "이사회의 결의"는 "신탁업자의 결정 또는 신탁계약"으로, "주주·이사또는 감사"는 "수익자 또는 신탁업자"로 본다.
- ⑤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집회의 소집 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 그 밖에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의 경우 그 위탁자,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수익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수익 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2조제3항제1호 중 "초과하는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위탁자가 위탁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5항 중 "발행인"을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 7항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 증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

익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1호 중 "발행인"을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31조 및 제132조제2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0조제10항 전단 중 "제368조제3항·제4항"을 "제36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4조제13호다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445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제 182조제1항·제8항"을 "제110조제3항, 제182조제1항·제8항"으로 한다.

17의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10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 또는 제110조의4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113조제1항"을 "제110조의6·제1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0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7부터 제19호의13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

권"으로 한다.

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자

19의3. 제10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19의4. 제10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치유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은 신탁업자

19의5. 제1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자

19의6. 제110조의5를 위반하여 신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4 및 제3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4.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34의5.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한 자별표 1에 제126호의2부터 제12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27호 중 "제110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제110조제1항, 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또는 제10항"으로, "발행한 경우"를 "발행 등을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28호의2부터 제12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9호 중 "제111조를"을 "제111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표에

- 제1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0호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6호 중 "집합투자업자"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한다.
  - 126의2. 제10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
  - 126의3.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26의4. 제109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26의5. 제10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6의6. 제10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치유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 128. 제110조제9항을 위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 경우
  - 128의2. 제110조의2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평가 등을 한 경우
  - 128의3. 제110조의3을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경우
  - 128의4. 제110조의4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128의5. 제110조의5를 위반하여 신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출 한 경우
  - 128의6. 제110조의6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128의7. 제110조의7을 위반하여 수익자집회의 소집, 결의, 통지, 수익자명부의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9의2.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발행, 평가, 판매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신탁계약이 이법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이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제110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	
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	
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	
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	
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2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 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 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 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 이라 한다)의 수익권 <단서 신설>

가.·나.(생 략)
3.(생 략)
② (생 략)
제4조(증권)① ~ ④ (생 략)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5)

수익증권발행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
<u>다)</u>
<u>수익권</u> . <u>다만,</u>
그 수익권에 대하여 제9조제7
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
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거나 이미 발행된 수익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제외
<u>한다.</u>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증권) ① ~ ④ (현행과 같
음)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 시된 것을 말한다.

#### ⑥ ~ ⑩ (생 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신 설>

- 2. ~ 4. (생략)
- ② ~ ⑥ (생 략)

제102조(선관의무 및 <u>충실의무</u>)

① 신탁업자는 <u>수익자에</u>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	
권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
	-
	-
	-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익증권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선관의무 및 <u>충실의무</u>	-
<u>등</u> ) ①신탁업에	_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u> 바탕으로 수익자에</u>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	-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u>재산</u> 의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u>산(해당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u>

1. ~ 7. (생 략) <u><신 설></u>

<신 설>

- ② (생 략)
-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 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

업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 평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 8. 담보권(수익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담보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담보권으로 한정 한다)
-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 탁하는 재산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

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생 략) <신 설> 전 또는 이익의 보장, 신탁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 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본 질적 업무(해당 신탁업자가 금 융투자업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신탁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 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2.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 탁받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업 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 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 3.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 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업 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④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 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 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탁업자를 위하여 신탁계약 의 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 반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 유하는 행위
-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 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①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정성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신탁계 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 대한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수익증권의 발행 등) ①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
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1. 신탁재산의 종류</u>

2. 신탁업자의 유형

-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신탁업자의 상호
-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액면액
- <u>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u>용
-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신탁계약기간
-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 3. 신탁재산의 구성 및 범위
-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사항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익증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 리 정할 수 있다.
- 1. 수익의 분배
- 2. 수익의 순위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 항으로서 수익권의 내용에 관 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신탁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발행 에 관한 계획(이하 "수익증권 발행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 익증권발행계획의 등록을 거부 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 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 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탁 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 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 니한 경우
  - 2. 수익증권발행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 3. 수익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

     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저해하는 경우
  - ⑥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수익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탁업자의 상호
-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수익증권의 발행일
- 4.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u>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항</u>

⑨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은 신탁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안 정성・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 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수익증권발행신탁 의 수익증권에서 그 발행과 수 익증권발행계획의 등록, 신탁재 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2(신탁재산의 평가 등)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 설>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 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신탁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2. 신탁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정하고 정확한 신 탁재산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 결과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발행가격 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 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신 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신탁재산평가 및 발행가격 산정의 적정성, 공정성 등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3(수익증권의 판매) ①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 른 수익증권을 판매하려는 경 우에는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 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수 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 계에 있는 신탁업자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를 초과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 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증권의 판매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의4(수시공시) ①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이 발행 된 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 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 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 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

     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추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시공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시공시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5(신탁보고서) ① 신탁 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 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 인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 아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 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협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 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 사인 등의 확인사항은 신탁재 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2. 신탁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
- 3.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평 <u>가액</u>
-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신탁업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 서를 제110조의4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보고서 의 작성,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6(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제110조제1항 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 우 해당 수익자는 신탁업자(해 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 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 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 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 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 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탁업자 는 수익증권과 관련한 신탁계 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

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 래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7(수익자집회) ① 제11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 행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에 대한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집회를 두며, 수익자집회 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신탁계약을 변 경하여 어느 종류수익자(「신 탁법 시67조제3항 후단에 따 른 종류수익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집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수익자로 구성되 는 수익자집회의 결의가 있어 야 한다. ② 「신탁법」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익자집회에 관하여 전 체 의결권(「신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갖는 의결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 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 익자가 수익자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 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수익 자집회의 소집을 그 신탁업자 에게 청구하는 경우 1개월 이 내에 수익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수익자집회를 소 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결권 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 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 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대해 서는 제189조제6항부터 제9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로, "수익자총회"는 "수익자집회"로 본다.

④ 수익자집회의 소집통지, 질 서유지, 의결권의 대리행사, 결 의취소·무효 및 부존재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363조제1 항 · 제2항, 제364조, 제366조의 2제2항 • 제3항, 제367조, 제368 조제2항 · 제3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2항, 제372조, 제373 조,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 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총회"는 각각 "수익자집회"로,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 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각각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신탁업자"로,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전체 의결권의 수"로, "이사회의 결 의"는 "신탁업자의 결정 또는 신탁계약"으로, "주주·이사 또 는 감사"는 "수익자 또는 신탁 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 집회의 소집 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의결권 행사의 구체 적 방법, 그 밖에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생략)

<신 설>

제112조(의결권 등) ①·② (생략)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다.
-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u>초과</u>
   하는 주식 <단서 신설>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① (현	틱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약	,]
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의 경우	<u>&gt;</u>
그 위탁자, 그 밖에 수익자 날	1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혀	<u>-</u> }-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u>-</u>
해당 수익증권 발행금액의 10	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팀	H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u>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수익증	<u> </u>
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2조(의결권 등) ①・② (현형	S)
과 같음)	
③	_
	_
	_
	_
1	_
	_
<u>초</u> ፯	4
하는 주식. 다만,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틱	<u></u>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7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7	4

2. (생략) ④ ~ ⑦ (생 략) <신 설>

① ~ ④ (생 략)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 우 신고 당시 해당 <u>발행인</u>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 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 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 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위탁자가 위탁한 주 식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 또 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 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2. (현행과 같음)
- ④ ~ ⑦ (현행과 같음)
- ⑧ 그 밖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5			
		발행인	(제11
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	중권의
경우 위탁자	를 포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점	<u> 같다)</u>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 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 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u>첨</u> <u>부서류</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생략)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 지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 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

		-
		-
		_
		_
		-
		_
		_
	⑥ (현행과 같음)	
	⑦	-
		<u>참</u>
	부서류, 증권신고서를 작성 등	<u> </u>
	<u>제출하는 자</u>	-
	⑧ (현행과 같음)	
제	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	고 O
	시) ①	-
		-
		-
		_
		_
		-
		-
	집합투자	<u> </u>
	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흔	<u>=</u>
	수익증권	-

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 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②・③ (생략)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 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
용) ①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
<u>익증권</u>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 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 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 로 본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u>집</u> 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 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 한 배상책임)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 ④
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
<u>에 따른 수익증권</u>
세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

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 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 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 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 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u>발행인</u>의 이사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 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 기인을 말한다)

·
1
<u>발행인(제110조제</u>
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
31조 및 제132조제2호에서 같
<u>다)</u>

2.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⑨ (생 략)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 의2제2항 · 제3항, 제367조, 제3 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 · 제2항, 제371조 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 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 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 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 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 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 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 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 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b>10</b>	
<u>제3</u>	
<u>68</u> 조제2항 • 제3항	
,	
제444조(벌칙)	
1. ~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
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
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
로 하는 자
가.・나. (생 략)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
서( <u>집합투자증권</u> 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

다)

13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
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
<u> 권</u>
<u></u>

라. ~ 사. (생 략) 14. ~ 29. (생 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u><신 설></u>

18. ~ 23. (생략)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82조제1항·제8항(제 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 제1항·제3항 또는 제279조제 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 록을 한 자

24의2. ~ 48. (생략)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의2. (생 략)
  - 5. <u>제43조제2항</u>에 따른 위탁계 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라. ~ 사. (현행과 같음)
14. ~ 29. (현행과 같음)
세445조(벌칙)
1 - 17 /처체코 가수)
1. ~ 17. (현행과 같음)
<u>17의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u>
여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등록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하
지 아니한 자
18. ~ 23. (현행과 같음)
24
제110조제3항, 제182조
제1항ㆍ제8항
<u> </u>
24의2. ~ 48. (현행과 같음)
세446조(벌칙)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43조제2항 또는 제109조의
2제6항

을 위반한 자

- 6. ~ 14. (생략)
-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u>포함한다)를</u>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 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자
- 17. ~ 17의3. (생략)
-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1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 14. (현행과 같음)
15
<u>포함한다) 또</u>
는 제110조의4를
16
제110조의6 · 제113조제1항
17. ~ 17의3. (현행과 같음)
18. <u>제103조제4항</u>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자
19의3. 제109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
에게 재위탁한 자
19의4. 제109조의2제8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신 설>

19의2. ~ 19의8. (생략)

20. · 21. (생략)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u>집합투자증권</u>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매도한 자

23. ~ 63. (생 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여금 위반행위를 치유하거
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신탁업자
19의5. 제110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자
19의6. 제110조의5를 위반하여
신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
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자
<u> </u>
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와
같음) 20 21 (청체코 가호)
20. • 21. (현행과 같음)
22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
<u>권</u>
23. ~ 63. (현행과 같음)
449조(과태료) ①

부과한다.

1. ~ 34의3. (생략)

<신 설>

<신 설>

35. ~ 49. (생략)

② ~ ④ (생 략)

-----.

1. ~ 34의3. (현행과 같음)

<u>34의4.</u>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

여 재산을 수탁한 자

34의5.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한 자

35.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